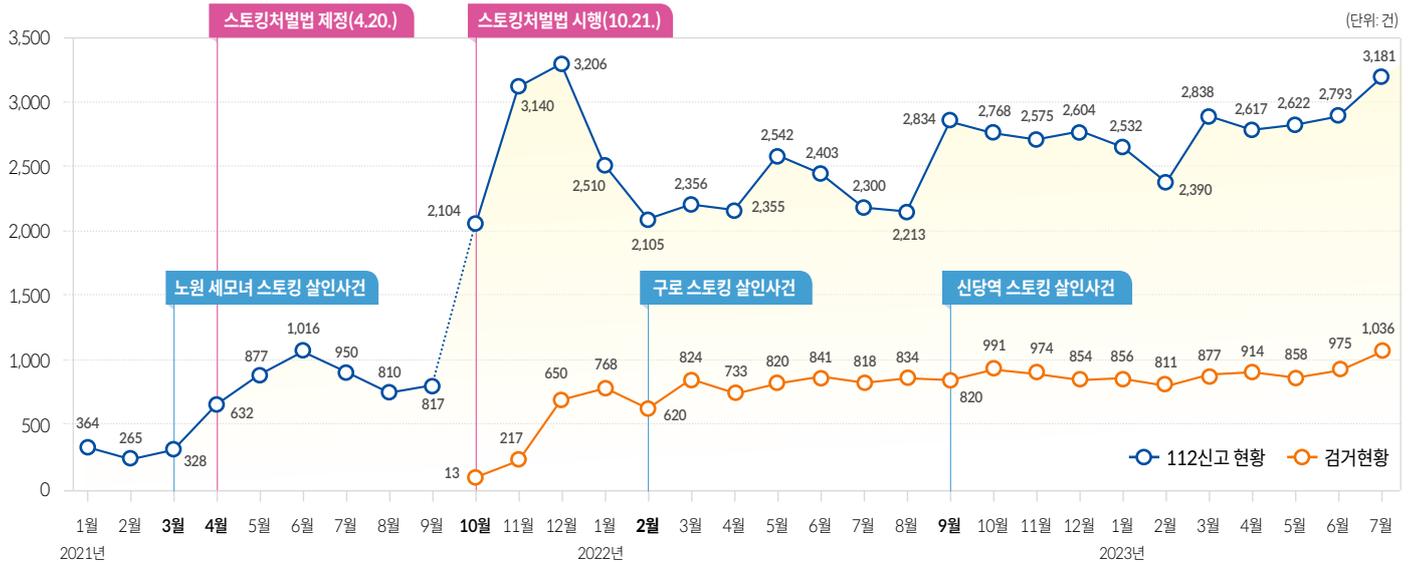


데이터로 보는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7월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이 일부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고, 스토킹행위의 정의가 확대되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한편,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라 한다)」은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다.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적절한 입법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스토킹행위 및 범죄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 112 신고 및 검거현황



자료: 경찰청(2023년 통계는 잠정통계)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2023년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55,796건에 달한다. 월평균 2,536건, 하루 평균 약 86건이 신고 접수되었다. 같은 기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는 17,104건이다.

2021년 10월 21일 부터 2023년 7월까지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거한 인원은 17,300명이다. 같은 기간 11,220명(64.8%)이 송치되었고, 5,912명(34.1%)은 불송치, 201명(1.1%)은 수사종지로 나타났다.



자료: 경찰청(2023년 통계는 잠정통계)

스토킹행위와 스톱킹 범죄

스토킹
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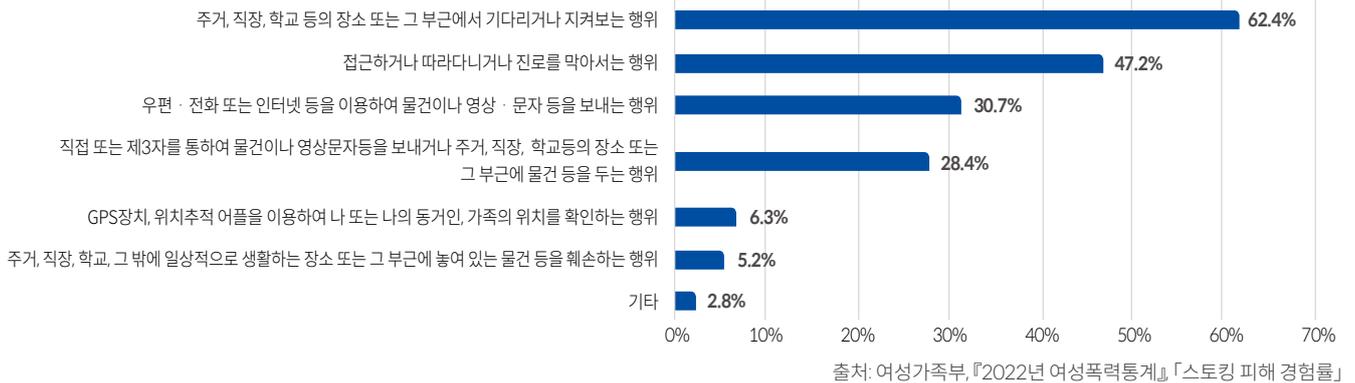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다음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전화 기능으로 물건등이 상대방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을 사칭하는 행위

(산설)
온라인 스톱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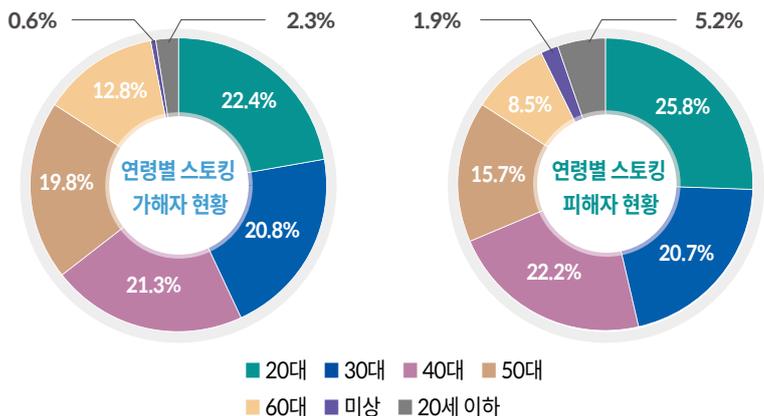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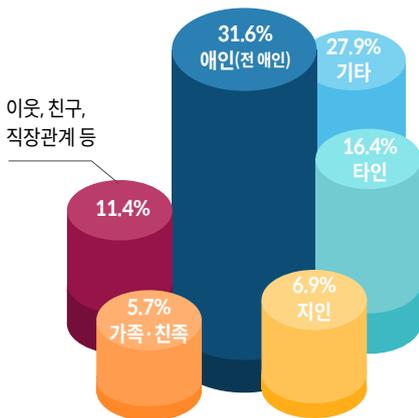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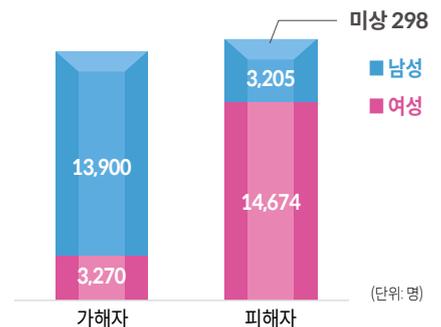
스토킹 피해 유형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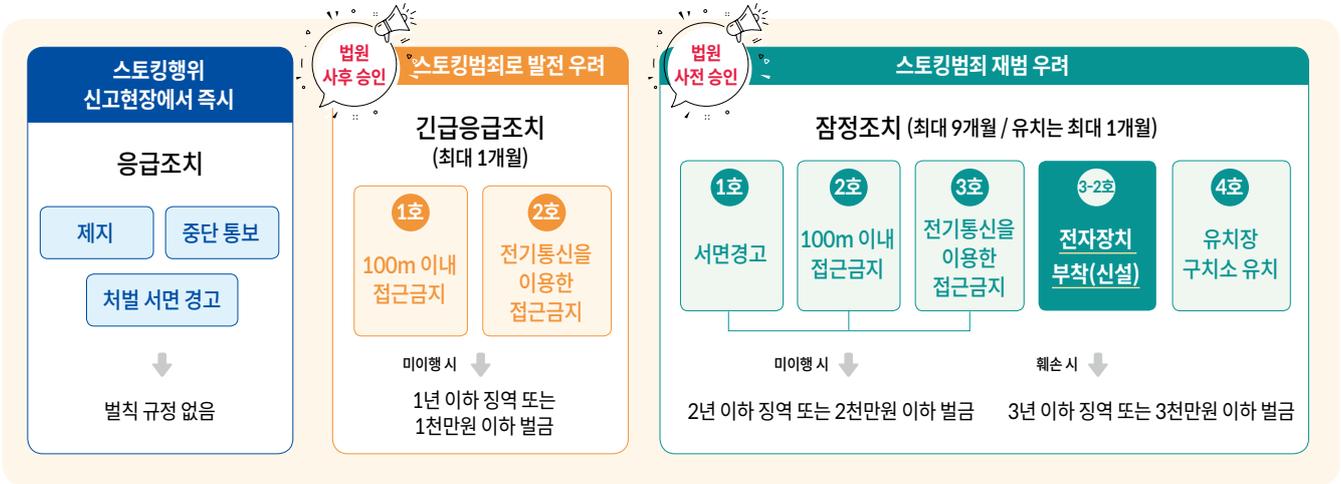
(2021년 10월 21일~2023년 7월 기준)

스토킹 범죄 관련 성비 현황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81%가 남성이었으며, 피해자의 약 80.7%가 여성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애인(전 애인 포함)이 3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27.9%), 타인(16.4%)이 뒤를 이었다.



자료: 경찰청(2023년 통계는 잠정통계), 2023년 이후 통계시스템 개선으로 피해자 관계 유형 변경

스톡킹처벌법상 제재 조치 현황



「스톡킹처벌법」시행 이후부터 2023년 7월까지 스톡킹 피해를 접수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한 경우는 6,599건이고 법원이 이를 승인한 건수는 6,031건이다. 한편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14,057건이며, 이 중 법원이 결정한 것은 12,008건이다. 전체 잠정조치 중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한 4호를 하나라도 포함한 신청은 1,800건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한다. 신청한 잠정조치 4호 중 법원이 결정한 건수는 894건(49.7%)이다.

[스톡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단계별 현황] (단위: 건)

(2021년 10월 21일~2023년 7월 기준)



개정 스톡킹처벌법 주요내용

스톡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온라인스톡킹 행위 유형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전자팔찌) 도입
피해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도입 피해자 국선번호사 제도 도입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정형 상향(전자장치 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경이 검사에게 잠정조치 취소·변경·연장 신청 근거 규정 신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 규정 신설 검사·사경이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청구 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 규정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4조(긴급응급조치)

- ① 사법경찰관은 스톱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톱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생략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 ③ ~ ⑦ 생략

제18조(스토킹범죄)

- ①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주요내용
노용호의원[2120179]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안 제4조제1항제1호).
고민정의원[2120402]	스토킹행위에 전화를 거는 행위 등 상대방이 인지하도록 접촉을 시도한 경우를 포함하고, 실제 발생하는 스톱킹 행위를 포괄하도록 스톱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스톱킹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소병훈의원[2120476]	스토킹범죄에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호의 공백상황을 최소화
최영희의원[2121200]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잠정조치로 추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잠정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유정주의원[2121317]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
송재호의원[2123320]	잠정조치에 스톱킹 행동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범죄예방과 재범률 및 재신고율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